줄기세포 임상윤리: 개인의 책임으로부터 제도적 일상으로

하 정 옥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

참고 사례 연구

어떤 사람이 희귀한 형태의 암이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증상을 앓고 있고, 치료 과정에서 비장을 절제했다. 병원의 병리학 부서가 이 희귀암 을 연구하기 위해 절제된 비장을 이용해서 배양 세포주를 만든다. 이 세포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과학자들은 생명공학 회사와 협력해서 특허 를 얻는다.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 세포주를 사용하려는 다른 연구소나 기관에서 로열티를 받기 시작한다.

시간이 흐른 뒤 병원으로 돌아온 환자는 자신의 비장세포가 상업적물품이 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. 자신의 비장에서 추출된 세포의 무게는 이제 원래 무게보다 훨씬 늘었고, 더욱이 이 세포들은 여러 도시의 몇몇 연구소에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다. 이 모든 일이 환자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. 환자의 허락을 받을 생각조차 없었다. 환자에게 이런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.

『생명과학의 윤리』 p.220 중에서

● 논의 배경 및 목적

- 최근 인간 배아의 연구 및 임상 응용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 등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논의가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. (보기)「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」(2003년 제정)
- 생명윤리, 연구윤리, 의료윤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윤리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교육이나 행정 지원 등의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상적 원칙만을 제시한 채 현장의 개별 연구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하는 상황임. 새로운 기술의 윤리적 실천은 개인적 도덕률이 아닌 제도적 일상으로 확립되고 구체화되어야 함.
- 줄기세포 임상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특히 Informed Consent에 초점을 두고자 함. 동의를 구하는 주체와 동의의 대상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의의 상황 등을 고민해 봄으로써 어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가를 고찰하고자 함.

● 줄기세포 임상과 Informed Consent

- 새로운 기술과 동의: 의료의 역사에서 "동의"가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거의 언제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. (보기) 뉘른베르크 강령

- Informed Consent의 정신: Informed Consent를 자발적 동의,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, 숙지된 동의 등으로 번역하는데 이 모두는 Informed Consent의 개념 정의와 그것이 추구하 는 목적을 담고 있다. 즉,

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하고

결정을 내리기 위해 생각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

- 이러한 심사숙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.
- 전문가의 입장에서 Informed Consent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또 한가지는 "이해"의 의무가 전문가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. 즉, 의사와 연구자들은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사안을 설명해 줄 방법을 찾을 의무를 지게 됨.
- 줄기세포의 경우는 기존의 Informed Consent에서 의사와 연구자들에게 부여된 설명과 이해의 의무에서 더 나아간 이슈를 제기. 그것은 바로 줄기세포의 multi/pluri-"potent"에서 가능성을 전문가들도 확정할 수 없다는 점.

● "무엇을" 동의할 것인가

- 줄기세포 특징의 "potent"의 동의: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동의?
- 동의권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고민 (cf. 의료 현장에서 많은 경우 동의는 선택이 아닌 포기의 결정.)
- 차후에 (동의 시점에서는 예상치 못한) 이윤 혹은 혜택 발생할 경우 그러한 다른 방향의 연구가 진행될 때의 추가적 동의.
- Newsletter 등으로 기증자에게 최신 정보 제공
- □ 동의를 서명과 함께 완결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지연된 결정으로.

● "누가" 동의를 구하는가

- 이해 갈등(Conflict of Interests)의 문제. (예) 영국 뉴캐슬 대학의 난자 공여 동의.
- 상담자로 누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.
- 전문 상담자의 육성과 정기적 교육 관리, 별도의 상담 공간.
- 일반인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와 설명 방식, 안내 책자.

● 어떤 정보를 제공 할 것인가

- right to know / right not to know
- 이타심에 호소하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의 제공 여부
- 특히 '자율성'보다는 '관계의 윤리학'을 중요시하는 여성의 경우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에 자신의 이해보다는 "genetic responsibility"를 중요하게 고려.

● Informed Consent에서 여전히 어려운 문제

- 많은 경우 동의는 동의권자가 여유롭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걱정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짐. 즉, 추상적 원칙으로서의 "자율성"이 실제로는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.
- 동의권자 스스로 자율성을 포기하고 전문가의 paternalism(온정주의적 개입)을 호소하는 경우.

- 전문가의 현장 경험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해라고 판단한 결정이 윤리적 원칙과 어긋나는 경우.
- 줄기세포 임상에서 Informed Consent가 충분하기 위한 과제
- 동의의 표준화: 상담 인력 관리, 제공되는 정보, 동의 절차와 환경.
- 동의의 구체화: 현재의 행정적 규제가 요구하는 추상적 동의가 아닌 충분한 정보와 이해가 실현되는 구체적 동의.
- 제도적 일상으로서의 윤리적 실천을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
- :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뒷받침되는 공공의 합의와 규제.

참고문헌

- 1. 박은정 외. 2005. 『세계 각국의 줄기세포 연구정책과 규제』. 세창출판사.
- 2. 로날드 문손. 2001. 『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』. 박석건·정유 석 외 옮김. 단국대학교출 판부. (Ronald Munson. 2000. Intervention and Reflection: Basic Issues in Medical Ethics, 5th edition. University of Missouri-St. Louis.)
- 3. 아툴 가완디. 2003. 『나는 고백한다, 현대의학을』. 김미화 옮김. 동녘사이언스. (Atul Gawande. 2002. Complications. Janklow & Nesbit Associates.)
- 5. 존 브라이언트·린다 바곳 라 벨·존 설. 2008. 『생명과학의 윤리』. 이원봉 옮김. 아카넷. (John Bryant, Linda Baggott la Velle, and John Searle. 2005. Introduction to Bioethics. West Sussex: John Wiley & Sons.)